

2)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건축부재(이하 주요 건축부재라 한다)는 한국공업규격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에 없는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에 인정하는 것
에야 한다.

2. 침구류의 방염 처리 유보 조치

가. 소방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중 침구류에 대하여는 "85.12월까지 방염 처리를 하도록 동 부칙 제2항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나. 방원의 경우, 방염 처리된 침구류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는 피부염에 발생될 우려가 있다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염 처리 기간을 198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유보 조치함.

3. 옥외 소화전에 대한 기술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와 111호 규정 중 옥외 소화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표준 옥외 소화전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357조 내지 제365조 및 제372조에서 규정된 옥외 소화전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이외의 옥외 소화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검합부 및 내압력등) 표준 옥외 소화전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어 생산하게 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동 제품이 검정 규칙 제358조, 제361조 내지 제364조 및 제3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검정 신청 등) ① 옥외 소화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 규칙 제1장 및 제2장을 적용하며, 형식 검정 신청서에 제출할 전품의 수량, 형식 변경의 승인, 범위, 정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개별 검정의 회계수권수량, 개별 검정의 합계 표시 및 검정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표준 옥외 소화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정 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검사항목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령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안전점검 결과 통계 작성 지침 보완

① 안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지침 : 협회협부의 전신화로 인해 안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방법에 일부 보완되었다.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성원칙

가. 월별, 용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나.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2) 작성 요령

가. 일반 양식(6-1-1)

- (1) 좌측 상단에 양식(6-1-3)과 같이 부서, 업종, 월별, 번호 코드를 기재한다.
- (2) 용도별 총합계를 1장에 종합 작성한다.
- (3) 점검건수 등 각 항목은 누계 숫자를 기재한다.
- (4) 양식(6-1-1)의 일반사항(II)은 기록하지 않는다.

나. 시설 상황(6-1-2)

- (1) 건물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 시설, 위험물 시설 등은 시설 단위로 작성한다.
- (2) 다수동인 경우 건축연도는 주건물의 건축연도를 기재한다.
- (3) 상태가 양호한 경우 해당란에 “G”로 복수이면 “ $G \times 3$ ”등으로 기재한다.
- (4) 미설치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0”, 복수이면 “ -0×3 ”으로 기재한다.
- (5) 불량인 경우 해당란에 ABC로 구분하여 “A(1,6)”, 복수이면 “ $A(1, 6) \times 3$ ”으로 기재한다.
- (6) 비대상으로 양호인 경우 “0-G”, 복수이면 “ $0-G \times 3$ ”으로 기재한다.
- (7) 비대상으로 불량인 경우 ABC로 구분하여 “0-A”등으로 기재한다.
- (8) 「시설상황」 및 「안전 점검 결과 집계표」의 회색 부분의 시설은 불량내역(「시설상황」 양식 하단의 “시설별 항목 분류”)을 기재하고, 백색 부분은 불량 정도 ABC로 구분 기재한다.
- (9) 「시설상황」 및 「안전 점검 결과 집계표」의 연소 위험 항목은 연소 위험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작성한다.

다. 안전 점검 결과 집계표

- (1) 부서, 업종 코드는 비교란의 코드 번호를 기재한다.
- (2) 번호 코드는 매수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를 기재한다.
- (3) 대상 등 각 항목은 시설상황에 건물별로 작성된 시설 상황의 합계를 기재한다.
- (4) 대상의 「불량 A」, 「불량 B」, 「불량 C」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회색 부분

- “T”란은 불량구분(A, B, C)의 합계 숫자를 기재한다.
- “1, 2, ……………”번호란은 「시설상황」의 시설별 항목 분류에 의해 작성된 해당 불량사항의 합계 숫자를 기재한다.

나) 백색 부분

- 해당 불량 구분의 합계 숫자를 기재한다.

라. 기타 유의 사항

- (1) 관계 법규에 의하여 완화 적용된 시설은 「시설상황」 및 「안전 점검 결과」 작성시 비대상으로 처리한다.

(예) 1. 6층 건물로서 5층 이상이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구획된 경우 : 피난 계단 비대상처리

시	설	옥 내 소 화 전	옥 외 소 화 전	스 프 링 클 러	물 문 무	포 말	이 산 화 탄 소	할 로 겐	분 말
번	호	53	54	55	56	57	58	59	60
대	상								
양	호 (G)								
미	설 치 (O)								
불 량 A	T								
	1	10							
	2	11							
	3	12							
	4	13							
	5	14							
	6	15							
	7	16							
	8	17							
	9	18							

새로 개정된 안전점검 결과 집계표 (일부)

예) ② 옥내소화전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내무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 비대상 처리

(2) 관계 법규에 대상인 시설 중에서 방재연구 위원회 회의 결과 설치 비대상으로 완화된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처리

(3) 관계 법규에서 층, 연면적에 따라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일반 사항」의 층, 면적 합계 건수와 「안전 점검 결과 집계표」의 대상 건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 비상 콘센트, 비상 조명 설비, 소화용수 설비, 특별 피난 계단(공동주택 제외), 방화 구획 등.

(4) 「시설 상황」 작성시 다음 사항 등은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기시설

나 공동 주택의 화기 사용 시설, 경계벽

다 병원, 학교 등의 간막이 벽